제944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<table>
<tr><th>no.</th><th>법령명</th><th>규제내용</th><th>결과</th></tr>
<tr><td>1</td><td>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
(특허청)</td><td>1.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요건(신설)
ㅇ 1. 산업재산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
2. 제4항 각 호의 산업재산 진단업무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

▶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

2.산업재산진단기관 관련 행정처분(신설)
ㅇ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지정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 분</th><th colspan="4">처분기준</th></tr>
<tr><th>1차</th><th>2차</th><th>3차</th><th>4차 이상</th></tr>
<tr><td>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</td><td>지정취소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나. 진단업무 수행 능력 상실
1)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
2) 그 밖에 진단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 발생</td><td>업무정지6개월
경고</td><td>지정취소
업무정지2개월</td><td>업무정지6개월</td><td>지정취소</td></tr>
<tr><td>다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</td><td>경고</td><td>업무정지2개월</td><td>업무정지6개월</td><td>지정취소</td></tr>
</table>
▶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</td><td>1.중요
2.비중요</td></tr>
</table>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2	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(특허청)	1.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요건(신설) ○ 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을 위한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요건을 규정(제정안 제4조제1항) – 시설요건: ①산업재산 비밀유지에 적합한 시설, ②데이터 입력·저장장치 등 효율적 전자화 업무에 적합한 장비 – 인력요건: ①정보처리분야 5년 이상 경력자 1명 이상, ②변리사 등 겸직금지 ▶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2.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작성 및 변경시 승인 관련 의무(신설) ○ 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주요 사항*에 대한 업무규정 제정·변경 시 승인 의무를 규정 * ①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②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·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③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▶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기술자격취득의 인정기준 등(신설) ○ 안전점검전문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(전문분야) 신설 ▶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2.안전점검전문기관 점검측정 장비기준(신설) ○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점검측정장비 기준 신설 ▶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	1.비중요 2.비중요
4	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(신설) ○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, 장비기준, 자본금 기준 신설 ▶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2.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(강화) ○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*의 기술자격 요건 상향 * 정기안전점검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 – 「건설기술 진흥법령」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중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상향(초급기술인↑ ⇨ 중급기술인↑) ▶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5	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(해양수산부)	1.총허용어획량의 대상기간 연장(신설) ○ 2024년 7월부터 총허용어획량(TAC) 제도를 적용받는 연근해 어업인들의 TAC 대상 어종별로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설정 ▶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	1.비중요
6	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(강화) ○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송주선약관에 중개·대리서비스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– (1차) 사업정지(10일) / (2차) 사업정지(20일) / (3차) 허가 취소 ▶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	1.비중요
7	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(공정거래위원회)	1.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(신설) ○ 매출액·이용자수 등이 일정 기준(시행령에 위임) 이상인 해외 통신판매업자·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– 국내대리인은 △소비자 불만 등 처리 △소비자 불만·분쟁의 원인·피해 파악 등 조치 △자료·물건 제출 △문서 송달을 대리 – 해당 사업자가 설립했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으로 지정하여야 하고, – 국내대리인 지정 결과 제출, 국내대리인의 성명 · 주소 등 정보공개, 사업자 · 국내대리인 간 유효한 연락수단 확보 등 필요 – 공정위는 해외 통신판매업자 · 통신판매중개자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가능 2.동의의결의 요건 및 이행강제금 부과(신설) ○ 공정위 조사 ·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충족하여야 할 요건 규정 – (기재사항) ❶사실관계, ❷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, ❸소비자 등의 피해구제 ·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 – (요건) ❶위법 판단시 예상되는 제재와 균형, ❷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 ○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기한까지 동의의결을 미이행한 경우, 동의의결 이행 · 취소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▶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,제32조의3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8	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자동차의 강제처리(신설) ㅇ 자동차의 강제처리 –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지자체장이 이동명령, 직접이동이 가능한 기준일이 되는 차량 장기 방치기간을 1개월 이상(자동차가 분해 · 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5일 이상)으로 규정 ▶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	1.비중요
9	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 의무화(신설) ㅇ 비상전원단자 연결 의무화 대상 건축물 범위 –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이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(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주가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)로 규정 ▶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	1.비중요
10	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실험동물 생산·수입·판매 및 동물실험 현황 등 보고(신설) ㅇ 실험동물공급자 생산 · 수입 · 판매 등 현황에 대한 보고절차 마련(안 제15조) ㅇ 동물실험시설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의 수 · 종류 및 처리 현황에 대한 보고절차(안 제22조) ▶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,제22조	1.비중요 2.비중요

<table>
<tr><th>no.</th><th>법령명</th><th>규제내용</th><th>결과</th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2.행정처분 기준 신설(신설)
○ 동물실험시설이 등록 소재지에 전혀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(안 별표 5)
– 동물실험시설이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: (1차) 등록취소
–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: (1차) 경고 → (2차) 시설 운영 또는 영업 정지 1개월 → (3차) 시설 운영 또는 영업 정지 3개월
–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: (1차) 시설 운영 정지 1개월 → (2차) 시설 운영 정지 3개월 → (3차) 등록취소

▶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</td><td></td></tr>
<tr><td>11</td><td>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
(국가유산청)</td><td>1.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취소 기준(신설)
○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△문화유산돌봄사업 중 지정문화유산 파손·원형훼손 △보조금 부당 집행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
<table><tr><th>위반행위</th><th>1차</th><th>2차</th></tr><tr><td>· (문화유산) <u>가치 상실 또는 저하에 이르는</u> 지정문화유산 파손 또는 원형 훼손</td><td>지정 취소</td><td>-</td></tr><tr><td>· (문화유산) <u>가치상실 및 저하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</u> 지정문화유산 파손 또는 원형훼손</td><td>시정 권고</td><td>지정 취소</td></tr><tr><td>· (보조금)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</td><td>시정 권고</td><td>지정 취소</td></tr></table>
▶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5</td><td>1.중요</td></tr>
</table>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2	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가유산청)	1.화재 등 대비훈련 실시 방법 등(신설) ○ 화재 등 대비훈련의 실시 방법으로 훈련주관기관의 장(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)은 ①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화재등 대비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, ②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· 훈련장소 · 훈련내용 · 훈련방법 ·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·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, ③ 참석자에게 훈련 실시 전 사전교육을 하도록 규정, 또한 화재 등 대비훈련 참여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 기관이 부담 ▶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3	1.비중요
13	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안 (행정안전부)	1.시정명령 등의 공표(신설) ○ 전국재해구호협회 사업에 시정이 필요하여 해당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령한 경우, 시정명령 사유 및 내용,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를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음. ▶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3조의4	1.비중요
14	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(경찰청)	1.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신청 절차 등(신설) ○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신청시 ▲ 사업계획서 ▲ 사업의 안전성 검증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▲ 그 밖에 시·도경찰청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▶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3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5	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실태조사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(신설) ㅇ (실태조사 업무)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로 하되 실태조사 '계획 수립 업무' 제외 ㅇ (실태조사 위탁기관)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▶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3	1.비중요